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2023. 03. 23. 제정

2024. 10. 21. 개정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핵의학기술' (이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이하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2장 연구자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4조 (연구의 진실성)** ① 회원은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연구행위는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 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회원은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6조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참여

**제 7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회원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는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 8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회원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9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회원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 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 10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11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제 12조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출된 연구의 원고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헬싱키선언(<https://www.wma.net>)에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및 환자 동의서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인 경우 기관동물보호 및 사용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 (젠더혁신정책)**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저자는 연구내용에서 성별 기술 즉,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고, 단일 성(性)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반드시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 14조 (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 15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6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제 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7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18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9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

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심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20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2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23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24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본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어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25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심사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6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논문 심사를 의뢰받고 제 3자에게 심사를 부탁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6.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연구

**제 27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8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9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이하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을 누락 표기하고 해당 논문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시 및 진학, 채용 및 승진 등)로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결과 및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투고 시 제출하는 ‘저자 정보 표기’를 통해 관련 개인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 5장 이해상충

**제 30조 (이해상충문제 관리)** ①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 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② 연구의 제안 및 수행, 보고와 심사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구자 또는 심사자는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1. 내부고발자 보호
2.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
3. 효율적인 감시 체계
4. 공저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5. 연구비의 공정한 관리

## 제 6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 31조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 내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 행위 및 연구윤리문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이하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통합회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 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조사소위원회는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과 중복되

지 않도록 한다.

**제 3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소집하며,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3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조 (관계자 출석)**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참고인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 취소, 논문 게재 취소, 논문투고 중지(3년),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학회 홈페이지 공지,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의결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 외에 최종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7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39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및 검증시효)**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이에 따르는 논문 사후관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 검증 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한다.

**제 40조 (진실성 검증 원칙)** ① 위원장이 연구책임자에게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그에 대한 검증자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청문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출 자료, 의견 및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학회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1조 (부정행위 등의 제보·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 42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연구과제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 통합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회원 유지 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 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3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 통합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8장 연구자 정책

**제 44조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 ① 데이터 오류 발생(표, 그림, 단순문구 오류 및 누락, 단순저자됨 등)과 연구출판윤리 위반(표절, 데이터 위조, 중복게재, 저작권 위반,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부정행위 등) 등의 이유로 발행한 학술지에서 게재된 논문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발행한 학술지에서 게재된 논문의 오류나 과오가 발견되어 확인된 경우 수정기사, 취소 및 철회기사, 편집인의 우려 표명, 공지문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공지하며, 이 때에는 수정된 기사에 대한 전체 서지 정보, 오류에 대한 설명 및 오류 수정(오류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의 공지와 감사), 참고문헌 목록에 수정과 관련된 기사 인용 및 원 저작물 인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 철회 및 우려를 표명할 경우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에서 제공되는 COPE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논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corrections-and-version> 에서 제공하는 ICMJE의 수정, 철회, 재발행 및 버전 관리 권장 사항을 따라 처리한다.

④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게재 철회 공지 및 이익이 발생한 모든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 45조 (출판 후 불만, 항의 처리)** 본 학회의 정책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저널 출판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불만 및 항의 처리 과정은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에서 제공되는 출판 윤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

1. 불만, 항의 대상자: 논문 제출자, 저자, 심사위원 및 독자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저작권, 데이터 도난, 명예 훼손 및 법적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시, 불만 및 이의 제기를 등록할 수 있다. 불만 또는 항의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른 질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2. 불만과 항의를 해결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는 자: 편집자, 편집위원회에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법률 자문가 또는 윤리위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처리 방안의 결과: 부정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처리 방안의 결과는 COPE의 지침을 따른다.

###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